#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08 발의연월일: 2020. 12. 16.

발 의 자:이주환・金炳旭・김예지

김용판 · 김정재 · 박대출

서병수・서일준・양금희

엄태영 · 윤창현 · 최승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과의 무역을 진흥하고 원활한 국제 물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매력도가 낮아 우수하고 유망한 국내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키는 처분에 갈음하여 세관장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신산업 분야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국 내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 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 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징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40조의2).

#### 법률 제 호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이하 이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공항·항만 물류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산업 분야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의 임대료 감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대료 감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납세자의 인적사항
-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생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고도화와 국제경쟁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 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 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 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 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산업"이라 한다)-----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 면할 수 있다. <신 설> ③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 주하여 공항·항만 물류산업 또 는 신성장동력산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신산업 분야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 <신 설> 리권자의 임대료 감면에 관하 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 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①・②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①・② (생 략) <신 설>

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 는 바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임대료 감면에 관하여 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과 같음)

-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과 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
- 1. 납세자의 인적사항
-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생 략)